2017년도

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2차 공모계획

2017. 9.

보 건 복 지 부

국 립 암 센 터

암정복추진기획단

목 차

Ⅰ. 공모개요 ····· 1

Ⅱ.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····· 3

Ⅲ. 신청요건 및 방법 ····· 9

Ⅳ. 과제평가 ····· 13

[붙임1]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 기준표 ····· 16

[붙임2]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····· 17

Ⅰ 공모개요

1. 사업목적

○ 한국형 암 원인 및 기전을 규명하고, 암 예방·진단·치료법 개발 및 적용으로 국민 보건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○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('16~'20)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연구 지원

2. 사업근거

○ 암관리법 제9조(법률 제14013호)

○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(보건복지부 예규 제79호)

○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('16~'20)

3. 지원내용

지원 프로그램	주요내용	연간 지원규모	지원기간
암 중개융합연구 (협동)	○ 암 발생·전이·내성기전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진단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한 다학제적 중개 연구 - 암기초연구 임상적용 중개연구 - 임상적용을 위한 항암신약 중개연구 - 융·복합 암 진단·치료기술 개발	5억원 이내	5년 이내 (3년+2년)
공익적 다기관 암 임상연구	○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암 진단·치료 가이드라인을 개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다기관 임상연구	5억원 이내 (※ 17년 지원액 : 3억원 이내)	5년 이내 (3년+2년)
암 예방·관리·서비스 연구(협동)	○ 암 예방, 검진, 완화의료 확대 연구 ○ 인구집단 기반 모니터링 및 중재연구 - 암발생 위험요인 규명 등	2억원 이내	5년 이내 (3년+2년)
기획·정책연구	○ 국가 암 데이터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	1.5억원 이내	10개월

4. 추진일정

○ 2017. 9.	2차 신규과제 공고
○ 2017. 10. 10. ~ 10. 16.	연구개발계획서 접수(접수마감 17:00)
○ 2017. 10. 23. ~ 10. 31.	서면평가
○ 2017. 11월 초	구두발표평가
○ 2017. 11월 중순	과제선정(안) 심의 및 보건복지부 승인
○ 2017. 11월 말	최종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
○ 2017. 12. 1.	연구과제 시작

➲ 구두발표평가 시 연구책임자가 사전협의 없이 구두발표평가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,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
➲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

Ⅱ 프로그램별 지원내용

암맹평가 대상	‘암 중개융합연구(협동)’ 제안요청서

지원규모 및 기간	❍ 연간 5억원 이내, 5년 이내(2단계, 3년+2년)
최종목표	❍ 암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암의 진단·치료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용적인 암극복기술 개발
주요 연구개발 내용	❍ 암 발생・전이・내성기전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진단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한 다학제적 중개연구 - 암 기초연구를 임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개연구 - 항암신약을 임상에 신속히 적용 가능하게 하는 중개연구 - 분자영상, 의료기기를 활용한 융복합 진단치료기술개발 중개연구
지원대상	❍ 산・학・연・병이 신청 가능하며,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하되, 기초의과학자와 임상의학자의 연계(세부과제 연구책임자로 참여)가 필수 조건임 [참고] 기초의과학자 및 임상의학자 구분 · 기초의과학자: Ph.D. 또는 진료업무가 없는 M.D. 및 D.D.S. · 임상의학자: 임상수련과정을 마치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진료업무가 있는 M.D. 및 D.D.S.(진단검사의학과, 핵의학과, 병리과 포함)
특기사항	❍ 연구기간 및 연구비 - **2017년(12개월): 2017.12.01.~2018.11.30.(5억원)** - 2018년(1개월): 2018.12.01.~2018.12.31.(0.42억원) - 2019년(12개월): 2019.01.01.~2019.12.31.(5억원) - 2020년(12개월): 2020.01.01.~2020.12.31.(5억원) - 2021년(12개월): 2021.01.01.~2021.12.31.(5억원) - 2022년(11개월): 2022.01.01.~2022.11.30.(4.58억원) * 정부예산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❍ 연구 수행 시 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’ 준수 ❍ 연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여부 등을 평가지표에 포함 - 비임상 및 임상 시험용 시료 등 기 확보, 개발물질에 대한 개발권(MTA 등) 확보 여부 등 ❍ 연구개발 결과 및 원 자료(raw data)는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❍ 연구결과는 연차별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여,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,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음 ❍ 암단백유전체 연구 및 암예방·검진·진단법 확대 연구 수행을 위하여 미국 국립보건원(NIH), 일본 국립암센터(NCC Japan) 등과의 공동연구 추진 과제 신청 등을 권장함

암맹평가 비대상	‘공익적 다기관 암 임상연구’ 제안요청서

지원규모 및 기간	❍ 연간 5억원 이내, 5년 이내(2단계, 3년+2년) **※ 1단계 연구비 연차별 증액(3억→4억→5억)**
최종목표	❍ 암 진단·치료 분야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요 현안(debatable topics or controversial issues)에 대한 해결책 제시
주요 연구개발 내용	❍ 암 진단 및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다기관 임상연구(희귀·난치암 포함) 지원 [연구주제 예시] · 암치료 전후의 조직분석(Serial biopsy)을 통한 내성기전 규명 연구 · 면역항암제의 최적 치료법 개발 : 용량, 용법 및 치료기간 등
지원대상	❍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- 다기관임상연구의 경우 5개 이상의 기관 참여가 필수조건
특기사항	❍ 연구기간 및 연구비 **- 2017년(12개월): 2017.12.01.~2018.11.30.(3억원)** - 2018년(1개월): 2018.12.01.~2018.12.31.(0.42억원) - 2019년(12개월): 2019.01.01.~2019.12.31.(4억원) - 2020년(12개월): 2020.01.01.~2020.12.31.(5억원) - 2021년(12개월): 2021.01.01.~2021.12.31.(5억원) - 2022년(11개월): 2022.01.01.~2022.11.30.(4.58억원) * 정부예산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❍ 최소 요구 성과 1) 전향적 임상연구로서 연구시작 후 3년 이내에 대상 환자 등록완료 (대상 환자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집) 2) 연구시작 후 5년 이내에 SCI 논문 1편 이상 게재(NEJM급 저널) ❍ 근거확립, 암환자 생존율 향상, 의료비 절감 등 고유의 성과지표 제시 ❍ 과제계획서 제출 시 주관기관의 ‘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접수확인서 혹은 승인서’를 제출하여야 함 - 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: 계획서(프로토콜), 증례기록지, 환자동의서 ❍ 기타 - 국립암센터에서 운영하는 eVelos system을 데이터관리플랫폼으로 사용해야함 - 연구개발 결과 및 원 자료(raw data)는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- 연구결과는 단계별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여,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,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음 - 암단백유전체 연구 및 암예방·검진·진단법 확대 연구 수행을 위하여 미국 국립보건원(NIH), 일본 국립암센터(NCC Japan) 등과의 공동연구 추진 과제 신청 등을 권장함

암맹평가 대상	‘암 예방・관리・서비스 연구(협동)’ 제안요청서

지원규모 및 기간	❍ 연간 2억원 이내, 5년 이내(2단계, 3년+2년)
최종목표	❍ 암 예방・검진・완화의료・생존자 관리 등의 제 분야에서 새로운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, 이에 바탕 한 국가암관리사업 및 정책의 방향 제시
주요 연구개발 내용	❍ 암 예방, 검진, 완화의료 확대 방안 ❍ 인구집단 기반 모니터링 및 중재 연구 ❍ 암연구 및 관리 법/제도 개선방안 [연구주제 예시] · 한국형 암환자 디스트레스 관리 모델 · 우리나라 환경성 발암물질의 역학 근거 · 암진료의 수도권 집중 원인 규명 및 해소방안 연구
지원대상	❍ 주관연구기관은 산・학・연・병 모두 가능하며, 2개 이상의 세부 과제로 구성
특기사항	❍ 연구기간 및 연구비 - **2017년(12개월): 2017.12.01.~2018.11.30.(2억원)** - 2018년(1개월): 2018.12.01.~2018.12.31.(0.17억원) - 2019년(12개월): 2019.01.01.~2019.12.31.(2억원) - 2020년(12개월): 2020.01.01.~2020.12.31.(2억원) - 2021년(12개월): 2021.01.01.~2021.12.31.(2억원) - 2022년(11개월): 2022.01.01.~2022.11.30.(1.83억원) * 정부예산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❍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연구체계로 세부과제를 구성하여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야 함 ❍ 연구 수행 시 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’ 준수 ❍ 연구개발 결과 및 원 자료(raw data)는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❍ 연구결과는 연차별로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여,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,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음 ❍ 암단백유전체 연구 및 암예방·검진·진단법 확대 연구 수행을 위하여 미국 국립보건원(NIH), 일본 국립암센터(NCC Japan) 등과의 공동연구 추진 과제 신청 등을 권장함

암맹평가 비대상	‘기획·정책연구’ 제안요청서

과제명	국가암데이터센터 설립 및 운영 계획 수립
지원규모 및 기간	1.5억원 이내, 10개월 이내
연구목적	❍ 4차 산업혁명 시대,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암 데이터자원(임상·암유전체·종양은행·암 공공데이터, 암 레지스트리, 암 관련 연구 등)의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, 수집·연계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암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 ❍ 보건복지부 국가 암 빅데이터 발전계획(질병정책과-9169, 2015)과 제3차 암관리 종합계획(2016)의 국가 암 데이터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전략 수립과 근거 확보
연구필요성 (정책 관련성, 시급성)	❍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 등 세계적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, 병원 IT 인프라도 우수하여 빅데이터 수집·분석·활용에 유리한 여건인 반면에,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·활용 초기 단계이며, 기관별로 분산된 데이터 간 연계가 미흡하여 의료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음 ❍ 따라서, 보건의료 기술혁신과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분산된 암 데이터를 국가가 책임져 암 데이터 수집·연계·관리를 위한 “국가 암 데이터센터” 설립이 시급함
연구내용	❍ **암 데이터 국내외 동향 분석** - 국내 암 종별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 등 활용 가능한 암 데이터 기본 동향 조사 - 국내외 암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시 - 국내외 암 데이터 수집·연계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·제도·정책현황 조사 - 지역암센터를 비롯해 국내 병원별, 전문기관별 암 종별 데이터 현황 파악 및 암 레지스트리 연계 가능성 검토 - 암 데이터 개방 및 공유에 대한 현황분석 데이터품질 및 범위 등 암 데이터 생성 및 공유·연계·활용에 한계점 분석과 시사점 제시 ❍ **암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수요조사** - 국내외 연구, 정책, 산업, 국민서비스 분야의 암 데이터 공유·활용 수요조사 - 국내외 암 데이터 공유·활용 수요조사 ❍ **암 데이터 수집·연계·관리 및 활용 체계 설계** - 국가 단위 암 종별 표준 레지스트리 구축방안 제시: 암 종별 표준화, DB 통합 및 연계, 암 레지스트리 분석과 모델링, 암 레지스트리 검색 및 추출, 암 레지스트리 활용 포털 구축 등 필요 기술 영역 검토 및 제시 - 국가 및 임상기관(지역암센터) 간 암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표준 모델 방안 수립 - 암 공공데이터(암 등록자료, 암 검진자료, 암 진료비지원 자료, 호스피스완화의료 자료) 수집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방안 수립 ❍ **국가 암 데이터센터 설립·운영계획 수립** - 국가 암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하기 위한 단계별 세부계획 수립 - 암 종별 레지스트리 구축의 비전 및 목표 확대 구축 방안 마련 및 활용 방향 제시

	❍ **국가 암 데이터 성과 환류를 위한 정책 마련** - 암 관련 연구 성과 공개를 통한 연구데이터 환류와 공개 정책 마련 - 암연구자원의 전략적 관리 및 활용 제고 방안 수립 -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복지부 암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센터로 지정을 위한 계획 마련(책임기관 법률적 확보 노력)
연구방법	❍ 국립암센터에서 암 빅데이터 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「국가 암 데이터센터」구축의 설립 근거에 중점 연구 ❍ 단계별 연구추진 방향 설정 - 1단계: 국가 암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내·외 동향 분석 - 2단계: 암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수요조사 - 3단계: 국가 암 데이터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- 4단계: 국가 암 데이터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정책 마련 ❍ 효율적 연구 추진방향 수립 ※ 연구혁신을 위한 연구 수행절차 목표 - (절차 간소화) 절차 및 R&D 표준서식 간소화 적용 - (성과중심관리) 위기 목표 재설정 및 빠른 의사결정 적용 - (연구사업 전담) 전담 사업인력을 통한 상시화·체계화 - (마일스톤 관리) 월간 마일스톤 관리를 통한 연구성과 관리 - (전문성 확보) 민·관 전문가 평가위원 협의체 운영 - (정책발굴기능) 법·규제개선 발굴, 정책 제안 활용
기대효과 및 정책활용계획	❍ 국가 암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- 범 국가단위의 암 종별 표준 레지스트리 구축을 목표로 암 데이터의 다목적 활용과 재생산으로 세계적으로 암 관련 연구 분야에서 주도적 입지 마련, 암 연구 역량 강화 및 높은 수준의 암 연구성과 창출 - 암 빅데이터를 통해 생애 암 전주기적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연계 분석 할 수 있는 플랫폼은 국가 암 연구의 새로운 가설 도출 및 연구 진행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- Cloud 기반의 국가 간 데이터공유를 위한 암 데이터 표준 플랫폼을 구축함으로, 국내·외 암 연구를 돕고 암환자·의료진 등 데이터 사용자의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 - 암 검진 사업, 보건 정책 수립 등 국가 암 공공사업을 위한 근거 자료를 생성 - 암 표준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중심의학(Evidence Based Medicine) 기반의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, 암 진단 및 치료, 보건 정책 수립의 가이드라인 제시

암맹평가 비대상	‘기획·정책연구’ 제안요청서

연구성과 활용유형	❍ 법령 제·개정에 반영(O)	❍ 학술발표(논문)( )
	❍ 제도개선반영(O)	❍ 언론/대국민 홍보(O)
	❍ DB/시스템 구축( )	❍ 보건교육자료로 활용( )
	❍ 가이드라인 개발(O)	❍ 기타( )
유사연구 현황	❍ 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전략 수립 연구 (2014.04.25.~2014.10.24., 국립암센터 이덕형),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지정연구 ❍ 암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(2016.12.30.~2018.12.29., 국립암센터 이건국),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지정연구 ❍ 정책-임상-오믹스 암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(2016.01.01.~2018.12.31., 국립암센터 오재환), 기관고유연구사업 단독연구	
특이사항	❍ **(마일스톤 관리)** 중간 성과물은 연구수행 후, 6개월 이내에 단계별 초안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	

Ⅲ 신청요건 및 방법

1. 신청요건

1) 연구기관 자격

○ 국·공립 연구기관

○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
○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○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
○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
○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➔ 해당 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(예: 컨설팅 회사의 경우, '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' 제출)

2) 연구책임자 자격

○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선임급 이상의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

○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,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임용계약 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, 해당 연구기관의 임면권자가 발행한 '임용확약서류'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
➔ 연구기관별 책임급, 선임급의 기준은 [붙임1]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 기준표 참조

3) 세부과제 구성요건

○ 지원 프로그램별 제안요청서(RFP)를 참고하여 세부과제를 구성하되,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제1세부 연구책임자를 겸해야 함

○ 세부과제 하위에 다른 세부과제를 구성할 수 없음(위탁과제는 구성 가능)

○ 기업체의 참여를 권장함

4) 신청 및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

가. 참여제한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, 연구개시 예정일(2017.12.)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

○ 최종 연구종료 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

○ 보건복지부 또는 타 부처 지원으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신청과제와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
➔ 모든 신청과제는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http://www.ntis.go.kr)를 통해 중복 여부 확인

나. 신청제한

○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

➔ 3책 5공 예외사항: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과제, 위탁연구과제

○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은 계속과제를 포함하여 1인 1과제만 참여(수행) 가능함(단, 수행 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(2018.2.16.)에 종료되는 경우 또는 정책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예외로 함)

연구개발계획서는 접수 후 연구책임자의 신청 및 참여제한 여부에 대해 신청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, 주관·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는 탈락됨

2. 신청방법

1) 신청절차

○ 신청을 원하는 연구자는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및 세부내용을 숙지한 후 적정 프로그램을 선택함

○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(http://rnd.ncc.re.kr)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, 접수 일정에 맞추어 전산 등록하여 접수함

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등록	➡	1. 온라인 등록사항 및 연구개발계획서 확인 2. 연구과제 신청공문 제출	➡	연구과제 신청완료
연구책임자		주관연구기관장		

전산 등록 시 참여인력의 과학기술인번호 등록·인증 등 필수사항 입력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,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(소속기관)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되므로,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는 접수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야 함

2) 숙지사항

○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암맹평가 실시

- 암 중개융합연구(협동), 암 예방·관리·서비스 연구(협동) 프로그램의 경우, 암맹평가를 실시하므로, 암맹용 연구개발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
- 암맹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선정제외,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➲ 자세한 사항은 [별첨] 2017년도 암맹평가 안내서 참조

○ 연구비 산정

- 신청 프로그램의 지원규모와 [붙임2]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적정연구비를 산정함.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, 본 지침에 위배되는 비용은 불인정함

○ 참여기업 부담금

-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 1.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: 총 연구개발비의 50% 이상
  2.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: 총 연구개발비의 40% 이상
  3.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: 총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
  4.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,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: 총 연구개발비의 40% 이상, 다만,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
  5. 그 밖의 경우: 총 연구개발비의 50% 이상

-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의 기준을 따름
  1. 대기업: 부담금액의 15% 이상
  2. 중견기업: 부담금액의 13% 이상
  3. 중소기업: 부담금액의 10% 이상

-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음
  1.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

     ➲ 대기업의 경우 현물 투자액의 50% 이내,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% 이내

2.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, 재료비,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

➔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% 이내,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% 이내

정부지원 연구비가 신청액보다 삭감 지원될 경우에도 신청 시 부담하기로 한 참여기업 부담금은 삭감할 수 없음

3)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

○ 접수기간: 2017. 10. 10.(화) ~ 2017. 10. 16.(월), 17:00까지

○ 제출서류: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공문(일괄 제출)
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전산파일(온라인 제출)

[참고] 프로그램별 제출서류

지원 프로그램	암맹평가 대상	제출서류
암 중개융합연구(협동)	암맹평가	제출공문, 연구개발계획서(**암맹용**, 일반용)
공익적 다기관 암 임상연구	-	제출공문, 연구개발계획서(일반용)
암 예방·관리·서비스 연구(협동)	암맹평가	제출공문, 연구개발계획서(**암맹용**, 일반용)
기획·정책연구	-	제출공문, 연구개발계획서(일반용)

Ⅳ 과제평가

1. 평가절차

1) 평가순서 및 반영비율

1차 평가 (서면평가)	➡	2차 평가 (구두발표평가)	➡	종합평가 (업적평가 등)	➡	총 점
A(30%)		B(70%)		C(가감점)		A+B+C

2) 평가 및 선정절차

사전검토

○ RFP 부합성, 중복신청 여부,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, 참여제한 여부, 암맹위반, 과제구성요건 등 검토

➔ 신청요건심사를 거쳐 평가대상 과제를 결정(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기회를 부여하나 마감일 이후에 제출되는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)

⇩

<1단계> 1차 평가 (서면패널평가)

○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암맹평가 실시

○ 연구목표의 적절성 및 연구내용의 우수성 등 평가

○ 2차 평가 대상과제 선별

- 프로그램별 선정 예정 과제수의 2~3배수로 선별

⇩

<2단계> 2차 평가 (구두발표평가)

○ 8인 내외로 구성된 프로그램별 과제평가단이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및 연구내용의 우수성 등 평가

⇩

<3단계> 종합평가 (업적평가 등)

○ 기 수행과제의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가감점 반영

○ 최종 지원 대상과제는 프로그램별 종합점수를 토대로 선정

○ 연구비 지원규모는 점수 및 세부과제 구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

⇩

<4단계> 결과심의 및 예비선정 과제확정

○ 전문위원회는 평가결과의 타당성, 예비선정 대상과제 및 지원액 적정성 등 심의

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선정 과제 확정

⇩

<5단계> 최종선정과제 확정

○ 예비선정 대상과제의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마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과제를 최종 확정

2. 평가기준

프로그램	평가항목	
	서면평가	구두평가
암 중개융합연구(협동) 암 예방・관리・서비스 연구(협동)	연구의 중요성	연구의 중요성
	연구의 혁신성	연구의 혁신성
	연구계획의 우수성 (연구착수를 위한 사전준비 여부)	연구계획의 우수성
	사업계획 부합성	연구자 능력
	활용 및 기대효과	활용 및 기대효과
공익적 다기관 암 임상연구 기획·정책 연구	연구의 중요성	연구의 중요성
	연구계획의 우수성	연구계획의 우수성
	연구자 능력	연구자 능력
	활용 및 기대효과	활용 및 기대효과

3. 가감점 기준

○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기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, 기 수행과제의 최종평가 결과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

[최종평가결과 반영기준]

구 분	가 감 점						
	최우수		우수	보통	하위	불량	연구 포기·중단
	조기 성공	연구기간 종료					
최종평 가결과	+3점	+2점	+2점	-	-2점	-3점	-2점
	점수≧90		80≦점수<90	70≦점수<80	60≦점수<70	점수<60	-

➔ 기 수행과제가 있는 경우, 기존 수행과제 선정시 반영한 가감점 대상 평가결과는 제외

➔ 최종평가결과 적용기간: 가점(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), 감점(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)

4. 평가점수 계산기준

○ 평가점수는 과제별로 평가위원이 부여한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되,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

○ 각 평가단계별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함

○ 신규과제 선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,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동점자 처리기준을 준용함

본 계획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기타 연구사업의 운영은 「2017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계획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 및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추진함

관련문의

○ (홈페이지) http://rnd.ncc.re.kr, http://www.ncc.re.kr

○ (문의처) TEL) 031-920-1081~3(사업관련), 042-389-1793(전산관련)

FAX) 031-920-1089

붙임1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 기준표

연구기관	책임급	선임급	연구원급	연구원보급
대 학	- 부교수 이상 -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	- 전임강사 이상 -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	-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-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부설 연구기관 6년 이상 근무자	-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이하
국/공립 의료기관 및 부설연구소 소유 민간의료기관	- 의사,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면허 취득 후 12년 이상	- 의사,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	- 의사,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	- 의사,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소지자 및 비의료인 연구자
국/공립 연구소	- 연구직 과장 또는 5년 이상 - 기술직 4급 이상 - 정부출연연구소의 책임급 연구원	- 연구관 - 기술직 5급 - 정부출연연구소의 선임급 연구원 -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/공립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사	- 연구사 - 기술직 6급 이하 - 정부출연연구소의 석사급 연구원	- 정부출연연구소의 학사급 연구원
정부투자기관 및 민간기업체	-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 연구경력 12년 이상 -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5년 이상	-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 연구경력 6년 이상 -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1년 이상	-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 연구경력 1년 이상	- 학사학위 이하 소지자

붙임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

<table>
<tr><th>비 목</th><th>세 목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>직접비</td><td>인건비</td><td>

1 **사용용도**

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·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

≪인건비 정의≫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정의</th></tr>
<tr><td>내부 인건비</td><td>•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(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)에게 지급하는 인건비</td></tr>
<tr><td>외부 인건비</td><td>•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(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)에게 지급되는 인건비
•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,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</td></tr>
</table>

2 **계상기준**

○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[1]을 해당과제 참여율[2]에 따라 계상하되, 총 연봉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
1) 급여총액 :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

≪인건비 산정기준≫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>세 부 산 정 내 용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</td><td>연봉제 적용기관</td><td>• 연봉총액 × 참여율
※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</td></tr>
<tr><td>연봉제 미적용기관</td><td>• 정부인정 12개 항목 × 참여율
- 기본급여(기본급, 상여금)
- 정액급(기본연구활동비, 능률제고수당기본급)
- 복리후생비(가족수당, 중식보조비, 자가운전보조비)
- 법정부담금(퇴직급여충당금,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기타기관</td><td>•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× 참여율</td></tr>
</table>

2) 해당과제 참여율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>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은 기관</td><td>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 비율</td></tr>
<tr><td>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</td><td>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</td></tr>
</table>

</td></tr>
</table>

비 목	세 목	내 용
		○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%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※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,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할 수 없음 ※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%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함. 단, 해당 미지급 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함 ○ 대학교수,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,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○ 연간 인건비 총액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, 각 과제별 참여율에 따라 과제인건비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함. 연구비 정산시 참여연구원 별 참여율 관리현황 증빙제출 ※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수행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함 ※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%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함(미지급 인건비 계상)
직접비	**인건비**	<내부인건비 지급 가능 대상> ·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·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·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·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(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) ·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제15조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에 소속된 연구원인 경우 ※ 연구중심병원 인건비 허용기준 참조

<table>
<tr><th>비 목</th><th>세 목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
·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(고용계약서 등)를 제출한 연구인력
·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

3 계상방법
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급여총액(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)×참여율×실제 참여기간(월)
※ 인건비 현물 산정기준: 수행기관 급여기준×참여율

참고
○ 사전승인사항: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
○ 참여연구원 변경: 연구수행기관 내부의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등을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

➔ 불인정사항
·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하였거나 미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
·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
· 현물부담액이 부족한 경우
</td></tr>
<tr><td>직접비</td><td>학생
인건비</td><td>
[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 해당]
1 사용용도
○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(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(리서치 펠로우)을 포함)에게 지급하는 인건비

2 계상기준
○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(man-month)을 기준으로 계상함
<table>
<tr><th>학사과정</th><th>석사과정</th><th>박사과정</th><th>박사후연구원</th></tr>
<tr><td>1,000,000원/월</td><td>1,800,000원/월</td><td>2,500,000원/월</td><td>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</td></tr>
</table>
※ man-month 총액 :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,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

3 계상방법
참여율 100%를 기준으로 아래의 금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.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
</td></tr>
</table>

비 목	세 목	내 용
		참고 ○ 참여율의 관리 ·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하여야 함 ·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·점검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· 소속기관에서 타기관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참여율 관리 필요 ○ 참여연구원 변경 :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여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함 ○ 사전승인사항 : 학생인건비를 당초 계획서 대비 5%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➔ **불인정사항** · 타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인건비 ·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원의 인건비 · 연구개발계획서에 충원으로 명시된 인원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, 충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비 시 · 인건비 지급 시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,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· 학생인건비를 전문기관 사전승인 없이 증액 또는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
직접비	**연구장비·재료비**	**1 사용용도** ○ 연구시설·장비: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연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(기기·장비가 도착되어 검수(설치)완료)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·장비(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,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), 연구시설의 설치·구입·임차·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(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, 건축비, 부지 매입·조성비 등 포함) ○ 재료비·전산처리비: 시약·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·관리비 - 연구비 정산시 물품 재고관리 현황자료 제출 ○ 시작품 제작비: 시제품·시작품·시험설비 제작경비 ※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에 계상이 가능하며, 자체 제작하는 경우 인건비, 재료비등에 반영 **2 계상기준** 실소요 경비를 계상함

비 목	세 목	내 용
		참고 ○ 사전승인사항 :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·시설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계획과 다른 연구장비·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당해연도 해당과제 종료일로부터 4개월 전 "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"의 심의를 완료하여 전문기관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과제종료 2개월 전에 구입과 설치가 완료되어야 함 ○ 연구시설·장비 도입의 타당성 심의를 위한 연구장비 도입심사평가단 운영 - 예산집행시점에서 구축하려는 1억원 이상의 고가연구장비 심사평가 ○ 3천만원 이하(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)의 연구시설·장비는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집행가능하나 집행 시 해당과제와의 합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(기관 결재문서 등) 비치할 것 ○ 해당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·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(www.ntis.go.kr)에 등록·관리(연구시설 ·장비에 대한 관리강화) ※ 정산 시 해당 연구장비의 「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 등록증」첨부 ○ 현물 산정기준 -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: 수행기관 장부가의 20% 산정 - 견품, 시약 및 재료비 :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- 생산·판매중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견품, 시약 및 재료비 : 수행기관이 생산·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➲ **불인정사항** · 해당 연구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및 기자재 구입비(해당 연구기간 종료 직전에 구입 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) 단,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(연차실적·계획서,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 명기) ·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,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·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·시설·공간에 대한 임차료 · 해당과제의 연구내용과 구체적인 연관성 및 합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은 장비 및 재료비 · 사무기기, 시설의 유지 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(PC, 프린터, 복사기 등 OA 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) 구입비 ※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,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는 불인정 사항이 아님 ·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,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, 바이러스 백신 등

비 목	세 목	내 용
		· 현물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·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
직접비	**연구 활동비**	**1 사용용도** ○ 국외여비 :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○ 수용비 및 수수료 :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, 복사, 인화, 슬라이드 제작비,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○ 기술정보활동비 : 전문가 활용비(회의수당 포함), 국내외 교육훈련비, 도서 등 문헌구입비, 회의장 사용료, 세미나 개최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원고료, 통역료, 속기료, 기술도입비 등 ○ 시험분석·임상시험 등 : 시험·분석·검사, 임상시험, 기술정보수집, 특허정보조사·분석·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○ 과제관리비 :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(세부과제가 있는 주관과제에만 계상) **2 계상기준** ○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,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함 -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, 국·공립 대학(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) 및 국·공립 연구기관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- 세부과제 조정·관리비는 회의식비에 대한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1인당 30,000원 이내로 계상함 ○ 비임상·임상시험비는 시험 인증기관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생되는 제비용으로, 당초 계획대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암정복추진기획단에 사전 문의하여야 함 ➲ **불인정사항** · 미참여인력의 여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·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·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, 차량 임차비, 유류비, 전기료, 수도료, 가스료 등 ·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, 청소비, 차량보험료, 경상피복비 등 · 종신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, 참가비 ·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

비 목	세 목	내 용
직접비	연구과제 추진비	1 **사용용도** ○ 국내여비 :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○ 사무용품, 연구환경유지비 :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비용 등 ○ 회의비 : 회의비(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, 전문가활용비 제외) ○ 연구과제 수행식대 :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(야근 및 특근 식대) 2 **계상기준** ○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,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함 -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, 국·공립 대학(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) 및 국·공립 연구기관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- 회의식비에 대한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1인당 30,000원 이내로 계상함 -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부품의 구입·유지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비용임 ➔ **불인정사항** · 출장(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)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·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구입·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· 연구과제 수행식대 중 평일 점심식대로 집행한 금액 ·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한 금액
직접비	연구수당	1 **사용용도**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·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- 기관별 기여도 평가기준 및 평가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연구비 정산 시 제출

비 목	세 목	내 용
		2 계상기준 인건비(인건비로 계상된 현물·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포함하되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)의 20% 범위에서 계상함 **참고** ○ 연구수당은 당초 계획대비 증액이 불가하며, 인건비를 감액하는 경우 실지급 인건비의 20%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 ○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**➔ 불인정사항** · 계획서 당초 예산 대비 초과 집행분 ·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· 세부 차등지급 기준 없이 일괄 지급하거나 평가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환수예정 ·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·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, 실지급 인건비의 20%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·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
직접비	**위탁연구개발비**	**1 사용용도**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**2 계상기준** 직접비, 간접비로 계상하되,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(인건비는 미지급인건비 제외)의 40%를 초과할 수 없음 **참고** ○ 사전승인사항 : 당초 계획대비 20% 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○ 위탁연구개발비의 예산(총액)의 변경 시 전문기관과 상의 후 진행

비 목	세 목	내 용
간접비	간접비	1 **사용용도** ① 인력지원비 ○ 지원인력 인건비 :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,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(한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,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) ○ 연구개발능률성과급 : 연구기관(주관/협동/공동/위탁연구기관)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② 연구지원비 ○ 기관 공통지원경비 :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○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: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○ 연구실 안전관리비 :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하는 경비 ○ 연구보안관리비 :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,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○ 연구윤리활동비 :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·운영,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,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○ 연구개발준비금 :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(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), 연구 연가,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(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),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○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: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(Web-DB, e-Journal) 구입비, 실험실 운영 지원비, 학술대회 지원비,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(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) ○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(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)

비 목	세 목	내 용
		③ 성과활용지원비 ○ 과학문화활동비 :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, 강연, 체험활동,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○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 :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·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,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·운영, 연구노트 교육·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○ 기술창업 출연·출자금 :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, 학교기업, 실험실공장,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**2 계상기준** ○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 : 직접비(미지급 인건비,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)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함 ○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 : 직접비(미지급 인건비,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)의 17% 범위에서 계상함 ○ 영리법인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포함) : 직접비(미지급 인건비,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)의 5%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함. 단,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」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의 경우 10%까지 계상할 수 있음 ○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% 범위에서 계상함 ○ 기술창업 출연·출자금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% 범위에서 계상하고, 설립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음 **참고** ○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기관 명의로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, 보건복지부 지원 사실,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**➔ 불인정사항** ·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

비고

1.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%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,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,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,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
2. 대학, 특정연구기관(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함)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해서는 안 됨
3. 보건복지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·관리·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
4.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
5.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함